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86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권칠승 · 서미화 · 전진숙
송옥주 · 민병덕 · 윤종균
전용기 · 김준혁 · 윤준병
이상식 · 손명수 · 박균택
한민수 · 임호선 · 이연희
임미애 · 이정문 · 김남희
박해철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교육·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임명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2018년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를 추천을 받아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③ 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는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의 설치) ① (생 략) <u><신 설></u> <u><신 설></u> <u>② · ③</u> (생 략)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u>② 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 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u> <u>③ 지원센터의 대표는 이사회 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이 임명한다.</u> <u>④ · ⑤</u>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